※ '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실무' 정정사항 안내

<table>
<tr><th>페이지</th><th>변 경 전</th><th>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6
(223)</td><td>4.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상향 조정(부가법 §46)
⋮
※ 2019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.</td><td rowspan="3">⇒</td><td>4. 신용카드 세액공제 상향 조정(부가법 §46)
⋮
※ 2019.1.1. 신고하는 2018년 2기부터 적용한다.</td></tr>
<tr><td>311
(312)</td><td>8. 납무의무의 면제(부가법 §69)
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,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.</td><td>8. 납부의무의 면제(부가법 §69)
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3,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.
※ 2019.1.1. 신고하는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.</td></tr>
<tr><td>227</td><td>4. 전자신고 세액공제
■ 연간 공제 한도액(부가가치세 + 소득세 또는 법인세)<table><tr><td>세무사</td><td>••••• (2019세액공제부터 200만원)</td></tr><tr><td>세무법인</td><td>••••• (2019세액공제부터 500만원)</td></tr></table></td><td>4. 전자신고 세액공제(조특령 §104의5)
■ 연간 공제 한도액(부가가치세 + 소득세 또는 법인세)<table><tr><td>세무사</td><td>••••• (2019세액공제부터 300만원)</td></tr><tr><td>세무법인</td><td>••••• (2019세액공제부터 750만원)</td></tr></table>※ 2019년 1월 ~ 2020년 12월말 까지</td></tr>
</table>